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

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-00호)

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량 등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.

■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불가식 지방 생산량을 줄이고 고기량(고기 생산성)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

• 소 한 마리(도체중량 432kg 기준)당 불가식 지방량을 100kg미만으로 감축

■ 육량등급별 지수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

육량지수 : 62.00미만(현행) → **62.70(2011.6.1)**

현 행	
육량등급	육량지수
A	67.50 이상
B	62.00 이상 ~ 67.50 미만
C	**62.00 미만**

→

1단계 : 2011.6.1부터	
육량등급	육량지수
A	67.50 이상
B	62.70 이상 ~ 67.50 미만
C	**62.70 미만**

→

2단계 : 2013.1.1부터	
육량등급	육량지수
A	67.20 이상
B	63.30 이상 ~ 67.20 미만
C	**63.30 미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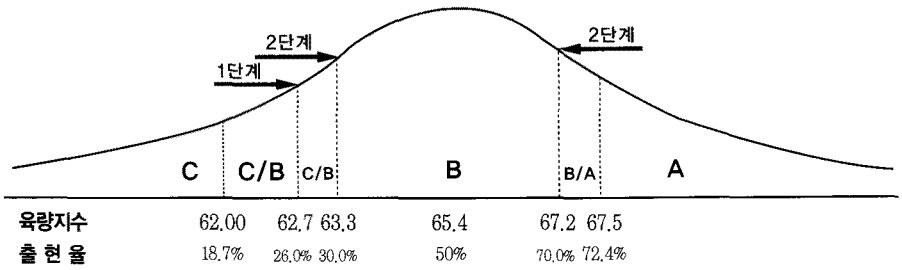

육량지수 = 68.184 − [0.625×등지방두께(㎜)]
+ [0.130 × 배최장근단면적(㎠)]
− [0.024 × 도체중량(㎏)] (단, 한우의 도체는 3.23을 가산함)

※육량지수 : 도축한 소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정육(고기)량의 비율을 지수화한 수치

■ 기대효과

• 육량등급 개선으로 불가식지방 생산량을 억제하여 쇠고기 생산비 절감으로 한우 비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

• 가축개량과 사양기술 수준에 맞춰 육질 및 고기 생산성을 높여 무분별한 장기비육에 따른 지방 과다형 고급육 생산을 억제

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내용 안내

자료제공 : 축산물품질평가원

축산법시행규칙이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해 입안예고(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-149호, 3월 29일)를 거쳐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.

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입안예고한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.

가.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냉도체 등급판정의 시설 및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, 등급종류 축소,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 변경

○ 온도체, 냉도체, 기계 등급판정방법에 따른 시설 및 적용조건 설정

○ 돼지고기의 등급종류 중에서 육질 3등급,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(현행 17개 → 7개)함으로써 소비자 · 유통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

(현행) 1^{+}A, 1^{+}B, 1^{+}C, 1^{+}D, 1A, 1B, 1C, 1D, 2A, 2B, 2C, 2D, 3A, 3B, 3C, 3D, E등급

→ (개선) 1^{+}A, 1A, 1B, 2A, 2B, 2C, 등외등급

○ 소 · 돼지의 등급종류에서 등외등급이 각각 'D', 'E'로 영문표기 되어 육량등급의 연장선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어, 이를 한글인 '등외'로 표시방법을 하고 인지도 제고

○ 소 도체에 육량등급표시 없이 육질등급만을 별도표기 할 수 있게 하여 육질등급 인지도 제고

○ 돼지 규격등급을 육질등급의 1차적 제한요인으로 분류(예, 1^{+}등급은 A등급에서만 부여)

나. 돼지 출하체중 증가를 감안하여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조정

○ 도체중 범위 : A · B등급 상한 2kg 상향, 하한 A등급 3kg, B등급 4kg 상향 조정

다. 비정상 물돼지(PSE육) 발생방지를 위한 육질판정항목 세분화 및 적용기준 강화

○ 현행 육색, 조직감, 지방색 항목을 육색, 육조직감(탄력도 · 수분삼출도 · 근육분리도), 지방색, 지방조직감(탄력도 · 지방층분리도)으로 세분화

○ PSE육의 심한 정도에 따라 등외등급까지 부여

라.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'결함' 내용을 구체화하여 세부항목으로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이상육 발생 억제

○ 결함 : 방혈불량, 이분할불량, 골절, 척추이상, 농양 등

마. 등외등급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육질판정의 신뢰도 제고

○ 성징 2형(종전 비거세 수퇘지)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좋지 못한 돼지먹이를 급여한 돼지, 왜소돈, PSE육 · DFD육, 결함육 등으로 평가되는 경우

바.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를 2단계에 걸쳐 조정하여 고기 생산량 증대

○ A등급 : 67.50 이상(현행) → 67.50 이상(유지) → 67.20 이상('13.1.)

○ B등급 : 62.00~67.50(현행) → 62.70~67.50('11.6.) → 63.30~67.20('13.1.)

○ C등급 : 62.00 미만(현행) → 62.70 미만('11.6.) → 63.30 미만('13.1.)

사. 닭 · 계란 등급판정 재판정 시 표본의 추출 기준의 모호한 점 보완

○ (현행)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많은 표본 추출 → (개선) 120% 이상

아.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닭고기 부분육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(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10-11호, 2010.11.25.)을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편입

자. 현행 계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이 모두 준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의 이력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인, 난각의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

차. 계란 품질평가의 상징성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계란 난각표시 내용('등급' → '판정') 변경하고 축산물의 표시기준(수과원 고시 제2010-17호, 2010.12.30.)에 따른 생산자 시도코드를 난각에 표시토록 함